

1998. 10. 17  
제153회 도의회 임시회

#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충 청 북 도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153회 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도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8천732억6천만원의 102.9%에 해당하는 8천984억8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9%에 해당하는 8천796억3천만원을 수납하고 12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에 해당하는 176억5천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 ○ 수납액의 내용은

- 지방세 1천963억8천만원
- 세외수입 1천822억2천만원
- 지방교부세 1천669억원
- 지방양여금 802억1천만원
- 국고보조금 2천406억5천만원
- 지방채 132억7천만원으로

이는 예산액의 100.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불납결손액의 내용은

- 무재산 9억9천만원
- 거소불명 1억6천만원
- 시효완성 5천만원입니다.

○ 미수납액의 내용은

- 거소불명 9억7천만원
- 재력부족 50억원
- 납세태만 23억8천만원
- 재산압류 93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565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천732억6천만원으로  
이중 91.6%에 해당하는 7천995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593억9천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에 해당하는 143억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익년도 이월액의 내용은

“청주국제공항개항기념 조형물 건립사업”의 14개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113억7천만원,  
공기부족에 따른 “21세기 충청북도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의 40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439억3천만원,  
“도립옥천전문대학건립사업”에 따른 계속비 40억9천만원이며

○ 불용액의 내용은

- |              |            |
|--------------|------------|
| - 계획변경 또는 취소 | 11억9천만원    |
| - 집행사유미발생    | 45억원       |
| - 예산절감       | 15억8천만원    |
| - 집행잔액       | 63억8천만원    |
| - 국고보조사업비잔액  | 6억7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은

예산액 2천632억5천만원의 105.8%에 해당하는 2천784억7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9%에 해당하는 2천753억4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수납액의 회계별 내역은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00억3천만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천425억1천만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1억3천만원
-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78억7천만원
-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1억원
- 증평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177억원이며

○ 미수납액 31억3천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가경3지구 택지매출대금 미수납액입니다.

<세출결산> 은 .

예산액 2천632억5천만원의 52.3%에 해당하는 1천377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333억1천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액의 35.0%에 해당하는 921억9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액의 회계별 내역은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3억9천만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819억9천만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49억3천만원
-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78억3천만원
-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1억원
- 증평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5억1천만원입니다.

○ 이월액의 내용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가경3지구 상수도공급시설 및 발산부락 도로개설사업비 등 161억5천만원과

증평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토지보상 및 문화유적 발굴비 등 171억6천만원입니다.

○ 불용액의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920억원

기타특별회계                        1억9천만원으로

- 예산집행잔액                    1억6천만원
- 사유미발생                        4천만원
- 계획변경                         135억7천만원
- 예비비                             784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은

199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천850억9천만원이었으나  
 1997년도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공채 매출등으로 1천  
 296억8천만원이 발생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대금 회수등으로 1천45억  
 7천만원이 소멸됨으로써  
 1997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천102억원입니다.

○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                            361억8천만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천565억2천만원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1억3천만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천만원
-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43억5천만원입니다.

<채무> 는

1996년도말 현재 2천878억7천만원이었으나

1997년도중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에 따른 지방채 및 IBRD군도개발에 따른 해외차관등으로 701억8천만원 이 발생되고,

수해복구사업비 및 IBRD군도개발비 상환으로 477억8천 만원이 소멸됨으로써

1997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천102억7천만원입니다.

○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 지방채 3천91억5천만원
- 해외차관 1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2개기금의 결산내용

은 전년도 기금적립액이 388억7천만원에서  
1997년도에 422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341억6천만원이 사용되어  
1997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470억원입니다.

### 주요 증감내용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366억원, 식품진흥기금 21억2천  
만원, 재해대책기금 12억4천만원등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301억원, 식품진흥기금 20억1천만  
원, 재해구호기금 3억9천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 먼저, <공유재산> 은

1996년도말의 공유재산 현재액이 3천649억7천만원이  
었으나,  
1997년도중 420억7천만원이 증가하고 326억2천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7년도말 총평가액은 3천744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 증가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요인은

옥천전문대학 신축이전 등에 따른 행정재산 286억3천만원과 폐천부지양여 등에 따라 잡종재산134억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외청사업소 이전에 따른 부지 등의 매각으로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물품의 관리> 는

1996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277억7천만원이었으나, 1997년도중 소방장비의 신규취득 및 기타 물품의 관리 전환, 양여등으로 33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매각,폐기처분등으로 8억원이 감소됨으로써 199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03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18억2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 일반회계가 17억9천4백만원으로

- |                 |           |
|-----------------|-----------|
| - 재해예방 및 복구비    | 14억6천4백만원 |
| -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 2천5백만원    |
| -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   | 2억6천5백만원  |
| - 부당이득 청구소송 반환금 | 3천5백만원    |
| -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 5백만원이며    |

○ 특별회계는 2천6백만원으로 공기업회계인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의 가경2·3지구 미분양 택지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  
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오늘의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